

(사업방법서 별지)

1. 보험종목의 명칭

무배당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

2. 보험의 종류

1형 즉시형, 2형 거치형

3. 연금지급형태

생존연금 지급형태	
종신연금형 (개인계약/부부계약)	정액형(10년, 20년, 100세)
	조기집중형(10년, 20년)
확정연금형	확정연금형(5년, 10년, 15년, 20년, 30년)
상속연금형	종신편환
	환급플랜(10년, 15년, 20년)

4. 연금개시나이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입나이,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

보험의 종류	연금개시나이(Y)	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가입나이	납입기간 및 납입주기
즉시형	45세 ~ 85세	45세 ~ 85세	일시납
거치형	45세 ~ 85세	(Y-5) ~ (Y-1)세	일시납

※ 주피보험자(주된 보험대상자)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.

※ '확정연금형 30년'의 경우 연금개시나이는 최대 75세임.

5. 보험기간

보험의 종류	보험 기간		
즉시형	종신연금형		보험계약일부터 종신까지
	확정연금형		보험계약일부터 확정연금지급기간 (5년 · 10년 · 15년 · 20년 · 30년)까지
	상속연금형	종신플랜	보험계약일부터 종신까지
		환급플랜	보험계약일부터 만기(10년 · 15년 · 20년)까지
거치형	연금개시전 보험기간		보험계약일부터 Y세(45세 ~ 최고 85세) 계약해당일 전일까지
	연금개시후 보험기간	종신연금형	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
		확정연금형	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 지급기간(5년 · 10년 · 15년 · 20년 · 30년)까지
		상속연금형	종신플랜
	환급플랜	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만기(10년 · 15년 · 20년)까지	

6. 배당에 관한 사항

배당금이 없음

7. 보험료에 관한 사항

가. 기본보험료

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로 최저납입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 1,000만원 이상으로 한다.

나. 추가납입보험료(거치형에 한함)

- (1)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.
- (2)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%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, 1회에 납입 가

능한 금액은 5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.

- (3) ‘(2)’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(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.5%,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2.0%)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(4)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(2)’ 의 한도를 적용한다.

8.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

- 가.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.
- 나. ‘가’ 에도 불구하고 상속연금형 종신편안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. 다만, 최초 판매개시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판매개시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하다.
- 다.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, 인출할 당시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(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)의 50%를 최고 한도로 한다.
- 라. ‘다’ 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으며,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마.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.2%와 2,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,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.
- 바.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,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.

9.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

가.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.

나.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, 당월 말일까지 1개월 간 확정 적용한다.

다.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,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% ~ 120% 범위내에서 정한다.

$$\text{공시기준이율 산출식} = \frac{\text{내부지표} + \text{외부지표}}{2}$$

1) 내부지표

$$\text{내부지표 산출식} = \frac{2 \times (I - E)}{A_{12} + A_0 - (I - E)}$$

- (주) ■ I :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
 ■ E :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
 ■ A_{12} :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
 ■ A_0 :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

2) 외부지표

$$\text{외부지표산출식} = B1 \times r + B2 \times (1 - r)$$

- (주) ■ B1 :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 다만,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(3년만기)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(YTM)로 한다.
 ■ B2 :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 다만,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-(3년만기) 시가평가기준 수익률(YTM)로 한다.
 ■ r :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, 5%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.
 ■ 가중이동평균이율 $(B_i) = \frac{B_i(-3) \times 1 + B_i(-2) \times 2 + B_i(-1) \times 3}{6}$
 - $B_i(-3)$: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

- $B_i(-2)$: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
- $B_i(-1)$: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

라. ‘가’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[‘가’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]의 해당 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.

마.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.5%로 하고,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.0%로 한다.

바.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(상품공시실)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.

사.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「공시이율 운용지침」에 따른다.

10. 기타사항

가.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

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「공시이율 + 1.5%」로 하고, 공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.

나.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
할인조건	할인금액
일시납보험료 1억원 미만 (다만, 일시납보험료 8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)	일시납보험료의 0%
일시납보험료 1억원 이상 ~ 2억원 미만	일시납보험료의 0.3%
일시납보험료 2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	60만원 + 2억초과 일시납보험료의 0.7%
일시납보험료 3억원 이상 ~ 4억원 미만	130만원 + 3억초과 일시납보험료의 1.0%
일시납보험료 4억원 이상 ~ 5억원 미만	230만원 + 4억초과 일시납보험료의 1.2%
일시납보험료 5억원 이상	350만원 + 5억초과 일시납보험료의 1.5%

다.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

- 1)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-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.
- 2) '1)' 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"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" 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%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라.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에 기재할 수 있다.

마.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에 한하여 연금지급주기는 월단위로 한다.